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15.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10.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3.26.)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3.27.)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
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의원)

2015년에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동안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은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왕궁, 왕릉 등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등 외곽핵심유적 등으로 백제왕도 관련유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가. 총괄검토

- 2015년에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 8개소¹⁾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관심 속에서 백제왕도 유적인 기존 유네스코 등재지 외에도 왕궁, 왕릉 등 핵심 요소와 외곽 핵심 유적

1) 공주 지역: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지역: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

익산 지역: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에 대한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보존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 근거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재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2개 도와 3개 시·군에 걸쳐 총 26개소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총사업비는 약 1조 4,02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국비 9,317억 원과 지방비 4,7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율은 59%, 예산 배정 당해연도 집행률은 78% 수준에 머무르며 해당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관련 전담 조직이 2024년 폐지된 이후 실무 추진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으로 보임.
- 이에 본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추진단 설치를 법제화하여 전문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제정안은 백제왕도의 역사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문화유산이 활성화되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지역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과 세계에 백제 문화유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이와 더불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장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고대 동아시아 문화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충실히 계승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및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법률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총칙사항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른 것임.

조문번호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보존·관리사업
제9조	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제10조	교육 및 홍보사업
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부칙	시행일

다.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은 법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백제왕도, 백제왕도 핵심유적 등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백제왕도가 소재한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왕도”란 백제 시대의 수도(首都) 지역으로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백제왕도 핵심유적”이란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3. “보존·관리”란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 및 연구, 복원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 안 제1조는 제정안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세계문화유산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바,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의 핵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 및 법적 기반이 부재하여 「국가유산기본법」 및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이라 함) 등에 근거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유사 입법례로,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이라 함)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단이 설치·운영되어 복원·정비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임.
- 제2조제1호는 ‘백제왕도’를 백제 시대의 수도 지역이었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및 그 인근 지역으로 정의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백제왕도의 공간적 범위와 핵심유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8개소 유적과 직접 연계하여 법의 적용 대상과 보존 관리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 제정안은 원활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라왕경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성공적 추진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신라왕경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제정안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도육성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및 제6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공주시장, 부여군수 및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그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조(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 및 추진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4.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계획 및 추진, 자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1억 5,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추계하였음.

- 참고로 「신라왕경법」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신라왕경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자원 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2조)

- 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 내 추진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공주·부여·익산 지역별 핵심유적 보존사업, 학술연구 지원, 교육·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매년 국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일련의 추진체계와 보고 의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존·관리사업)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6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2. 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12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3.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8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2017년 12월 국무총리 훈령(제700호)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추진단이 설치·운영되어오다 2024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이 폐지되었음. 현재는 고도보존육성팀 산하 백제왕도계가 유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청 소속 인력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직원 5명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행정안전부는 안 제7조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7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15억 8,4000만원(연평균 3억 1,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추계함²⁾.
- 본 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신라왕경법」에서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겠음.

2) [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176	352	352	352	352	1,584	317

주: 2026년은 시행일자를 감안하여 6개월분의 운영비를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라왕경법」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는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6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12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8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제2조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안 제8조에서 보존·관리사업의 대상으로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공주지역 6개, 부여지역 12개, 익산지역 8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수를 한정하지 않거나 「신라왕경법」과 같이 보존·관리사업의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음.

「신라왕경법」

제8조(복원·정비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정비
2. 황룡사 복원·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4. 월정교 복원·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8. 쪽샘지구 발굴·정비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12조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5) 부칙(안 부칙 제1조)

- 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결정 시 ①국민에게 그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②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③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국가유산청은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

안 제2조제6호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8조 각호의 명시된 숫자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안 제2조제6호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 정합성을 위하여 안 제8조 각호의 명시된 숫자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가. 각호의 핵심유적 개수를 삭제하고 ‘등’으로 수정함(안 제8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6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호 중 “12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8개”를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항 첫머리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첫머리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첫머리에 “제1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백제왕도가 소재한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지로 <u>발전시키</u>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 ----- ----- ----- ----- ----- <u>발전시키</u>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보존·관리”란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 및 연구, 복원 등의 행위를 <u>포함한다</u> .	제2조(정의) ----- -----. 1. ~ 2. (원안과 같음) 3. ----- ----- ----- ---- <u>말한다</u> .
제8조(보존·관리사업)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6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8조(보존·관리사업) ----- ----- ----- ----- -----. 1. ----- ----- <u>등</u> ----- -----

2. 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12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3.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8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2. -----
----- 등 -----

3. -----

등 -----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

-----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

-----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② <u>제1항에 따른</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백제왕도가 소재한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제왕도”란 백제 시대의 수도(首都)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공주시 및 부여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백제왕도 핵심유적”이란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3. “보존·관리”란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 및 연구, 복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5조(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 및 추진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4.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존·관리사업)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2. 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3.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